

아산탕정자이 메트로시티(A3BL) 무순위(사후) 1차 입주자모집공고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



청약Home 앱 설치 바로가기

※

단지 주요정보

(분양문의) 1833-2543

주택유형	규제지역여부	무순위(사후) 자격요건	
민영	비규제지역	무순위(사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전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재당첨제한	전매제한	거주의무기간	분양가상한제
없음	없음	없음	미적용

구분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무순위(사후) 분양일정				
		입주자모집공고일	청약 접수일	당첨자 발표일	서류접수	계약체결
일정	2026.03.20.(금)	2026.04.29.(수)	2026.05.04.(월)	2026.05.08.(금)	2026.05.12.(화)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2026.05.14.(목)

1

공통 유의사항

-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콜센터는 청약홈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이용안내 및 기본적인 청약자격 상담을 하고 있으며 고객 상담 과정에서 청약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한 정확하지 않은 정보의 제공으로 일부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청약홈 콜센터 상담내용은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자세한 문의사항은 사업주체를 통해 확인하시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산탕정자이 메트로시티 건보주택」 내 분양 상담전화(☎1833-2543) 등을 통해 입주자모집공고의 내용과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나, 간혹 폭주하는 상담전화와 신청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하여 정확하지 않은 정보 제공으로 청약 관련 사항에 대한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객 여러분께서는 청약과 관련한 상담은 청약의 참고 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신청자 본인이 입주자모집공고를 통해 청약자격 등을 숙지하시어 관련 서류 등을 발급받아 직접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라며,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 신청 등에 대해서는 신청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2025.10.3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2019.11.0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5항 및 제23조제2항제7호에 따라 우선공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88조의 출입국사실증명서를 사업주체에 제출해야 합니다. 장기해외체류자는 무순위(사후) 신청이 불가하며, 이를 위반하여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됩니다.

출입국사실증명서 해외체류기간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입국 후 7일 내 동일국가 재출국 시 계속하여 해외에 체류한 것으로 봄) 국외에 거주한 기간은 국내 거주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해당 주택건설지역으로 청약할 수 없습니다. 단, 90일 이내의 여행, 출장, 파견 등 단기 해외체류는 국내거주로 간주되어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1)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으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국내거주로 간주되어 신청 가능합니다.

- 사례2)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으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한 경우 국내거주로 불인정되어 신청이 불가합니다.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8항에 따라 세대원 중 주택공급신청자만 생애에 직접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건전한 주택청약 문화정착을 위한 정부의 방침에 따라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청약 이전에 아래와 같이 청약신청 유형별 사용 가능한 인증서를 미리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청약신청 유형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네이버인증서	KB국민인증서	토스인증서	신한인증서	카카오인증서
APT 잔여세대 (무순위)	O				X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0조제1항에 따라 본 무순위(사후) 입주자모집공고의 입주자 선정 및 동·호수 배정은 한국부동산원에서 실시합니다.
-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 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본인의 자격사항에 대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하시어 부적격 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음이 확인될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 조치하며 관계법령에 의거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위장전입 및 불법 전매제한 등을 통한 부정한 당첨자는 「주택법」 제65조 및 「주민등록법」 제37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한 2021.02.19.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6조에 따라 「주택법」 제64조제1항 및 제65조제1항을 위반하여 적발된 경우, 위반한 행위를 적발한 날부터 10년간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본 주택의 무순위(사후)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6.04.29.(수)**이며(청약자격 요건 중 나이, 거주요건 등의 판단기준일), 주택관리번호는 2026910096입니다.
- 본 주택은 무순위(사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전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을 대상으로 공급합니다. **(외국인 청약불가)**
- 본 주택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6.03.20.(금)이며, 최초 주택관리번호는 2026000051이므로, 본 무순위(사후) 입주자모집공고에 기재되지 않은 단지여건, 유의사항 등의 세부 내용은 반드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통해 확인하신 후 청약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본 주택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시 1순위 및 2순위 청약 마감 단지로, 예비입주자를 대상으로 추가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미계약 세대를 공급하는 것으로서 본 무순위(사후) 입주자모집공고의 입주자로 선정되어 계약을 체결하고 분양권을 소유한 경우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에 의거 향후 청약 시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간주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 및 계약 등 주요일정을 안내해 드립니다.

구 분	무순위(사후) 접수	당첨자발표	서류접수	계약체결
일 정	2026.05.04.(월)	2026.05.08.(금)	2026.05.12.(화)	2026.05.14.(목)
방 법	■ (PC·모바일) 청약홈(09:00 ~ 17:30) ■ 현장접수 불가	■ (PC·모바일) 청약홈	■ 사업주체 견본주택 (주소: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불당동 1517번지)	

※ 청약신청 취소는 청약신청일 당일 17:30까지 가능하며, 청약신청일 당일 17:30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청약신청 취소 불가

※ 모바일 :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모바일 청약 시,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인증서를 청약홈 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기 바라며, 청약 당일 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바랍니다.

- 본 무순위(사후) 입주자모집공고의 청약 신청은 1인 1건만 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청약 시 모두 무효 처리합니다.
- 2018.12.1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호의3, 제2조제4호에 의거 ‘세대’ 및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정의가 변경되었습니다.
- “세대”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이하 “세대원”)으로 구성된 집단(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

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부·모, 장인·장모, 시부·시모, 조부·조모, 외조부·외조모 등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이하 같음) :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아들·딸, 사위·며느리, 손자·손녀, 외손자·외손녀 등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전혼자녀 등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을 말하며,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함

- 부동산 거래신고,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신고 의무화로 아산시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및 별표1 규정에 의거 6억원 이상의 주택매매 계약(최초 공급계약 및 분양권·입주권 전매를 포함)의 부동산거래 신고 시 자금조달계획과 입주계획서 및 매수자 본인이 입주할지 여부, 입주 예정시기 등 거래대상 주택의 이용계획의 신고를 의무화하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규정에 의거 부동산 계약 시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관할 소재지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공동으로 ‘부동산거래신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거래신고에 따른 필요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공해야 하며,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 미비·미제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과태료 부과 등의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인지세 납부 관련 안내

- 본 아파트 공급계약서 및 발코니확장 계약서는 「인지세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에 해당되며, 계약서 또한 「인지세법」상 ‘도급문서’로서 인지세 납부대상으로 「인지세법」 제1조에 의거 인지세 납부 대상이 되며, 공급계약 및 발코니확장 체결 시 사업주체와 분양계약자는 과세기준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연대하여 균등납부 하기로 합니다. 또한, 분양계약자가 분담부분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납부하지 않거나 과소 납부, 인지분실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분양계약자에게 있습니다.

※ 정부수입인지는 취급 금융기관에 방문하여 구매하거나, 전자수입인지사이트 (<https://www.e-revenuestamp.or.kr>)에서 발급 가능하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소비세과(☎126)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납부세액 : 부동산 거래계약서의 실거래가격(분양대금 + 프리미엄)을 기재금액으로 하여 해당되는 세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2022.12.31.개정된 「인지세법」 제8조 제3항에 따라 공급계약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 계약체결 이후 부적격 당첨, 공급질서 교란행위, 통장매매 등의 사유로 계약이 취소될 경우 사업주체에 인지세 환부를 요구할 수 없으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기재금액	1천만원 초과 ~ 3천만원 이하	3천만원 초과 ~ 5천만원 이하	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1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10억원 초과
납부액	2만원	4만원	7만원	15만원	35만원

- 정부수입인지는 분양권 매매 당사자뿐만 아니라 물건을 중개하는 공인중개사나 등기 대행하는 법무사도 구매하여 첨부할 수 있습니다.

- 정부수입인지는 1회에 한하여 출력되므로 직접출력 시 반드시 프린터 상태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재발행 불가)

- 본 주택의 전매제한은 최초 당첨자발표일로부터 적용되며 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무순위(사후)
전매제한기간	없음

■ 공급위치 : 충청남도 아산시 탕정면 호산리 26번지 일원 (아산 신도시센트럴시티 도시개발사업 A3BL)

■ 공급규모 : 아파트 지하 3층, 지상 35층 12개동 총 1,638세대 중 무순위(사후) 606세대

■ 입주시기 : 2029년 06월 예정(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함)

■ 공급대상

주택 관리번호	모델	주택형 (전용면적기준)	약식 표기	무순위(사후) 공급 세대수	잔여세대 동·호내역	
					동	호
2026910096	01	059.9941A	59A	5	307	205,401,403,604,901
	02	059.9843B	59B	20	307	202,302,402,602,702,1002,1202,1302,1402,1602,1702,2002,2102,2202,2402,2502,2702,2902,3402,3502
	03	084.9905A	84A	384	301	201,301,302,401,402,501,601,602,802,902,1002,1202,2202,2401
					302	201,202,301,302,502,601,602,701,1002,1102,1301,1701,2201,2801,3201
					303	202,301,302,502,902,2402,2502,3002
					304	201,202,301,302,401,601,602,2201,2202,2801
					305	201,202,204,301,302,304,401,402,404,502,601,604,704,804,904,1001,1002,1004,1101,1104,1301,1504,1601,1704,1804,2004,2104,2204,2404,2504,2604,2801,2804,2904,3004,3104,3204,3304,3402,3502
					306	201,202,204,301,304,401,404,501,502,504,601,604,701,702,801,802,804,1101,1104,1201,1202,1301,1402,1404,1504,1701,1702,1704,1804,1902,1904,2001,2002,2004,2301,2401,2402,2404,2502,2604,2701,2702,2704,2801,2802,2804,2904,3001,3002,3101,3102,3104,3201,3202,3301,3304,3404,3501
					308	201,203,301,303,304,401,403,404,501,503,504,601,603,604,701,703,704,801,803,804,901,903,904,1003,1004,1101,1301,1401,1403,1501,1503,1604,1901,1904,2003,2203,2301,2601,2703,2704,2801,2901,3001,3101,3201,3301
					309	201,202,204,301,302,401,402,404,504,601,604,702,704,804,904,1002,1101,1104,1202,1204,1301,1302,1402,1404,1601,1602,1604,1702,1704,1801,2104,2202,2204,2301,2304,2401,2402,2602,2704,2801,2802,2901,2904,3002,3101,3102,3104,3201,3204,3404,3502
					310	201,204,302,304,401,402,501,502,504,701,702,704,801,802,902,904,1001,1004,1101,1104,1201,1204,1302,1402,1404,1504,1602,1701,1801,1901,1904,2202,2301,2302,2304,2401,2402,2501,2502,2601,2602,2701,2802,2901,3002,3101,3102,3302,3304,3401,3402
					311	201,203,204,301,303,304,401,403,404,501,503,504,601,603,604,703,704,801,901,1101,1103,1104,1201,1203,1204,1301,1303,1304,1404,1503,1604,1701,1803,1804,1901,1904,2001,2101,2304,2401,2404,2703,2801,2804,2901,2904,3003,3101,3201,3304
					312	201,203,204,301,303,304,401,403,404,501,503,504,701,704,801,803,804,901,904,1001,1004,1101,1103,1104,1204,1303,1304,1401,1404,1501,1504,1603,1604,2003,2104,2203,2401,2403,2404,2803,3004
	04	084.9923B	84B	149	301	303,403,703,903,1903,2303,3103,3403
					302	303,503,703,803,903,1103,1303,1503,1603,1803,1903,2303,2503,2903,3203
					303	403,503,603,803,903,1103,1803,2103,2203,2303,2503,3203
					304	203,303,403,503,703,803,903,1303,1403,1503,1603,1803,2803,2903,3103
					305	303,403,503,603,1003,1203,1303,1703,2003,2103,2803,2903,3003,3203,3303,3403
					306	203,403,503,603,903,1003,1103,1603,2003,2103,2703,3203
					308	302,502,602,702,802,1002,1102,1402,1602,1802,2002,2102,2202,2402,2502,2902,3002,3102,3302,3502
					309	203,303,503,603,703,803,1003,1203,1303,1403,1503,1703,2903,3003
					310	203,403,503,703,903,1003,1203,1403,1803,1903,2003,2103,2303,2403,2603,3003,3203,3303
					311	202,302,402,802,902,1002,1202,1302,1402,1502,1602,1802,1902,2202,2502,2702,2802,2902,3002
					301	204,304,404,504,604,704,804,904,1104,1404,1704
	05	084.9921D	84D	27	302	204,304,404,604,804,904,1004,1204,1504,1604,1904,2404,2604,3004,3204,3304
	06	084.9409E	84E	21	312	202,302,402,502,602,802,902,1002,1102,1202,1302,1402,1702,1802,2102,2302,2502,2702,2802,3002,3202
합 계				606		

■ 공급금액 및 납부일정

(단위: 세대, 원)

약식 표기	동별 라인별	층구분	공급 세대수	공급금액				계약금 (10%)		중도금 (60%)						잔금 (30%)
				대지비	건축비	부가가치세	계	계약시	계약후 1개월이내	1차(10%)	2차(10%)	3차(10%)	4차(10%)	5차(10%)	6차(10%)	입주 시정기간
										2026.11.18.	2027.03.18.	2027.08.18.	2028.03.17.	2028.08.18.	2029.01.18.	
59A	307동 3,4,5호	2층	1	159,844,636	246,155,364	-	406,000,000	10,000,000	30,600,000	40,600,000	40,600,000	40,600,000	40,600,000	40,600,000	40,600,000	121,800,000
		3-4층	1	162,600,578	250,399,422	-	413,000,000	10,000,000	31,300,000	41,300,000	41,300,000	41,300,000	41,300,000	41,300,000	41,300,000	123,900,000
		5-9층	1	165,356,520	254,643,480	-	420,000,000	10,000,000	32,000,000	42,000,000	42,000,000	42,000,000	42,000,000	42,000,000	42,000,000	126,000,000
	307동 1호	3-4층	1	159,844,636	246,155,364	-	406,000,000	10,000,000	30,600,000	40,600,000	40,600,000	40,600,000	40,600,000	40,600,000	40,600,000	121,800,000
		5-9층	1	162,600,578	250,399,422	-	413,000,000	10,000,000	31,300,000	41,300,000	41,300,000	41,300,000	41,300,000	41,300,000	41,300,000	123,900,000
59B	307동 2호	2층	1	155,513,870	239,486,130	-	395,000,000	10,000,000	29,500,000	39,500,000	39,500,000	39,500,000	39,500,000	39,500,000	39,500,000	118,500,000
		3-4층	2	158,269,812	243,730,188	-	402,000,000	10,000,000	30,200,000	40,200,000	40,200,000	40,200,000	40,200,000	40,200,000	40,200,000	120,600,000
		5-9층	2	161,025,754	247,974,246	-	409,000,000	10,000,000	30,900,000	40,900,000	40,900,000	40,900,000	40,900,000	40,900,000	40,900,000	122,700,000
		10-19층	6	163,781,696	252,218,304	-	416,000,000	10,000,000	31,600,000	41,600,000	41,600,000	41,600,000	41,600,000	41,600,000	41,600,000	124,800,000
		20층 이상	9	165,750,226	255,249,774	-	421,000,000	10,000,000	32,100,000	42,100,000	42,100,000	42,100,000	42,100,000	42,100,000	42,100,000	126,300,000
84A	301동 1,2호/302동 1,2호 303동 1,2호/304동 1,2호 305동 1,2호/308동 3,4호 310동 4호/311동 3,4호 312동 1호,3호,4호	2층	15	207,483,062	319,516,938	-	527,000,000	10,000,000	42,700,000	52,700,000	52,700,000	52,700,000	52,700,000	52,700,000	52,700,000	158,100,000
		3-4층	30	211,026,416	324,973,584	-	536,000,000	10,000,000	43,600,000	53,600,000	53,600,000	53,600,000	53,600,000	53,600,000	53,600,000	160,800,000
		5-9층	44	214,569,770	330,430,230	-	545,000,000	10,000,000	44,500,000	54,500,000	54,500,000	54,500,000	54,500,000	54,500,000	54,500,000	163,500,000
		10-19층	49	218,113,124	335,886,876	-	554,000,000	10,000,000	45,400,000	55,400,000	55,400,000	55,400,000	55,400,000	55,400,000	55,400,000	166,200,000
		20층 이상	35	220,081,654	338,918,346	-	559,000,000	10,000,000	45,900,000	55,900,000	55,900,000	55,900,000	55,900,000	55,900,000	55,900,000	167,700,000
	305동 4호 306동 1호,2호,4호 308동 1호 309동 1호,2호,4호 310동 1호, 2호 311동 1호	2층	10	203,939,708	314,060,292	-	518,000,000	10,000,000	41,800,000	51,800,000	51,800,000	51,800,000	51,800,000	51,800,000	51,800,000	155,400,000
		3-4층	18	207,483,062	319,516,938	-	527,000,000	10,000,000	42,700,000	52,700,000	52,700,000	52,700,000	52,700,000	52,700,000	52,700,000	158,100,000
		5-9층	37	211,026,416	324,973,584	-	536,000,000	10,000,000	43,600,000	53,600,000	53,600,000	53,600,000	53,600,000	53,600,000	53,600,000	160,800,000
		10-19층	53	214,569,770	330,430,230	-	545,000,000	10,000,000	44,500,000	54,500,000	54,500,000	54,500,000	54,500,000	54,500,000	54,500,000	163,500,000
		20층 이상	93	216,538,300	333,461,700	-	550,000,000	10,000,000	45,000,000	55,000,000	55,000,000	55,000,000	55,000,000	55,000,000	55,000,000	165,000,000
84B	301동 3호 310동 3호	2층	1	207,483,062	319,516,938	-	527,000,000	10,000,000	42,700,000	52,700,000	52,700,000	52,700,000	52,700,000	52,700,000	52,700,000	158,100,000
		3-4층	3	211,026,416	324,973,584	-	536,000,000	10,000,000	43,600,000	53,600,000	53,600,000	53,600,000	53,600,000	53,600,000	53,600,000	160,800,000
		5-9층	5	214,569,770	330,430,230	-	545,000,000	10,000,000	44,500,000	54,500,000	54,500,000	54,500,000	54,500,000	54,500,000	54,500,000	163,500,000
		10-19층	6	218,113,124	335,886,876	-	554,000,000	10,000,000	45,400,000	55,400,000	55,400,000	55,400,000	55,400,000	55,400,000	55,400,000	166,200,000
		20층 이상	11	220,081,654	338,918,346	-	559,000,000	10,000,000	45,900,000	55,900,000	55,900,000	55,900,000	55,900,000	55,900,000	55,900,000	167,700,000
	302동 3호/ 303동 3호 304동 3호/ 305동 3호 306동 3호/ 308동 2호 309동 3호/ 311동 2호	2층	4	203,939,708	314,060,292	-	518,000,000	10,000,000	41,800,000	51,800,000	51,800,000	51,800,000	51,800,000	51,800,000	51,800,000	155,400,000
		3-4층	11	207,483,062	319,516,938	-	527,000,000	10,000,000	42,700,000	52,700,000	52,700,000	52,700,000	52,700,000	52,700,000	52,700,000	158,100,000
		5-9층	27	211,026,416	324,973,584	-	536,000,000	10,000,000	43,600,000	53,600,000	53,600,000	53,600,000	53,600,000	53,600,000	53,600,000	160,800,000
		10-19층	39	214,569,770	330,430,230	-	545,000,000	10,000,000	44,500,000	54,500,000	54,500,000	54,500,000	54,500,000	54,500,000	54,500,000	163,500,000
		20층 이상	42	216,538,300	333,461,700	-	550,000,000	10,000,000	45,000,000	55,000,000	55,000,000	55,000,000	55,000,000	55,000,000	55,000,000	165,000,000

약식 표기	동별 라인별	층구분	공급 세대수	공급금액				계약금 (10%)		중도금 (60%)						잔금 (30%) 입주 자정기간
				대지비	건축비	부가가치세	계	계약시	계약후 1개월이내	1차(10%)	2차(10%)	3차(10%)	4차(10%)	5차(10%)	6차(10%)	
										2026.11.18.	2027.03.18.	2027.08.18.	2028.03.17.	2028.08.18.	2029.01.18.	
84D	301동 4호	2층	1	208,270,474	320,729,526	-	529,000,000	10,000,000	42,900,000	52,900,000	52,900,000	52,900,000	52,900,000	52,900,000	52,900,000	158,700,000
		3-4층	2	211,813,828	326,186,172	-	538,000,000	10,000,000	43,800,000	53,800,000	53,800,000	53,800,000	53,800,000	53,800,000	53,800,000	161,400,000
		5-9층	5	215,357,182	331,642,818	-	547,000,000	10,000,000	44,700,000	54,700,000	54,700,000	54,700,000	54,700,000	54,700,000	54,700,000	164,100,000
		10-19층	3	218,900,536	337,099,464	-	556,000,000	10,000,000	45,600,000	55,600,000	55,600,000	55,600,000	55,600,000	55,600,000	55,600,000	166,800,000
	302동 4호	2층	1	204,727,120	315,272,880	-	520,000,000	10,000,000	42,000,000	52,000,000	52,000,000	52,000,000	52,000,000	52,000,000	52,000,000	156,000,000
		3-4층	2	208,270,474	320,729,526	-	529,000,000	10,000,000	42,900,000	52,900,000	52,900,000	52,900,000	52,900,000	52,900,000	52,900,000	158,700,000
		5-9층	3	211,813,828	326,186,172	-	538,000,000	10,000,000	43,800,000	53,800,000	53,800,000	53,800,000	53,800,000	53,800,000	53,800,000	161,400,000
		10-19층	5	215,357,182	331,642,818	-	547,000,000	10,000,000	44,700,000	54,700,000	54,700,000	54,700,000	54,700,000	54,700,000	54,700,000	164,100,000
		20층 이상	5	217,325,712	334,674,288	-	552,000,000	10,000,000	45,200,000	55,200,000	55,200,000	55,200,000	55,200,000	55,200,000	55,200,000	165,600,000
84E	312동 2호	2층	1	207,483,062	319,516,938	-	527,000,000	10,000,000	42,700,000	52,700,000	52,700,000	52,700,000	52,700,000	52,700,000	52,700,000	158,100,000
		3-4층	2	211,026,416	324,973,584	-	536,000,000	10,000,000	43,600,000	53,600,000	53,600,000	53,600,000	53,600,000	53,600,000	53,600,000	160,800,000
		5-9층	4	214,569,770	330,430,230	-	545,000,000	10,000,000	44,500,000	54,500,000	54,500,000	54,500,000	54,500,000	54,500,000	54,500,000	163,500,000
		10-19층	7	218,113,124	335,886,876	-	554,000,000	10,000,000	45,400,000	55,400,000	55,400,000	55,400,000	55,400,000	55,400,000	55,400,000	166,200,000
		20층 이상	7	220,081,654	338,918,346	-	559,000,000	10,000,000	45,900,000	55,900,000	55,900,000	55,900,000	55,900,000	55,900,000	55,900,000	167,700,000

※ 본주택은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주택으로 상기 주택형별 공급금액은 분양가 자율화에 따라 각 세대의 주택형별, 동별, 호별, 층별, 등 차등을 두어 적의 조정하여 책정한 금액입니다.

※ 상기 공급금액은 발코니 확장 및 추가선택 품목 미포함 금액이며, 공급계약 체결시 별도 계약을 통해 선택이 가능합니다.

※ 소유권이전등기 비용 및 취득세 등 제세공과금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분양가에 계상되지 않았거나 변경되는 토지관련 조세 [종합토지세(분리과세 기준 등)]는 추후 부과되는 실 과세금액을 입주자 잔금 납부 시 납부하여야 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0조에 의거 계약금, 중도금, 잔금으로 구분하였으며, 동 규정에 의거 중도금 납부 일자는 건축공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편집 및 인쇄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견본주택 분양사무실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공급 신청 시 [주택형] 또는 [형]란은 입주자모집공고 상 주택형(㎡)으로 기재하나 평형으로 오해하여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라며, 주택규모 표시방법을 종전의 평형 대신 넓이표시 법정단위인 제곱미터(㎡)로 표기하였으니 신청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평형환산방법 : 공급면적(㎡) x 0.3025 또는 공급면적(㎡) ÷ 3.3058]

※ 면적표현은 소수점 4째 자리 제곱미터(㎡)까지 표현되며(면적산출 근거에 의해 소수점 5째 자리에서 버림처리), 공용면적을 세대별로 분배할 경우 주거전용면적 비율 기준으로 소수점 4째 자리까지 산출 후 전체 총 면적을 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강제 조정하여 오차를 최소화 합니다.

■ 분양대금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계좌구분		금융기관	납부계좌	예금주
분양대금	계약금 1차	하나은행	231-910014-88905	교보자산신탁(주)
	2차 계약금, 중도금, 잔금		세대별 가상계좌 부여	

• 공급대금 계약금 납부계좌는 발코니확장 및 추가선택품목 납부계좌와 상이하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2차 계약금, 중도금, 잔금 납부계좌는 가상계좌로 부여되며 모계좌(하나은행 231-910014-88905)로 이체되어 관리됩니다.

- 세대별 분양대금 납부계좌(가상계좌)는 계약체결 시 세대별 공급계약서에 명기하여 고지할 예정입니다.(타은행 계좌이체 및 무통장 입금 가능합니다.)

• 지정된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 납부일에 상기 해당 금융기관 계좌로 입금하시기 바라며, 사업주체에서는 납부기일 및 납부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 금융거래의 투명성을 위하여 온라인 수납만을 인정하며, 견본주택에서 일체의 현금 및 수표 수납은 하지 않으므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타인 명의 등 계약금 납부 주체가 당첨자와 상이하거나 불분명하게 입금된 경우에는 계약금 미납 및 계약 미체결로 처리될 수 있으며, 그로 인한 제반 문제에 대하여 사업주체에서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본 공급계약과 관련된 분양대금은 반드시 상기에 명시된 계좌에 입금하여야 하고, 그 외의 방법으로 납부한 경우에는 분양대금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또한, 선납 시 주택도시보증공사 분양보증의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 무통장 입금시에는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예시 : 301동 101호 홍길동: 3010101홍길동/ '입금자'란 기재 시 문자수 제한이 있을 경우 동·호수를 우선 기재하고 성명은 기재 가능한 문자까지 최대한 기재)
- 착오납입에 따른 문제 발생 시 당사는 책임지지 않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무통장입금자 중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및 계약 신청 시 제출서류 확인결과 공급자격을 달리한 부적격자로 판정될 경우 일정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이자가 발생 되지 않습니다.

■ 발코니 확장공사

- 건축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4호, 제46조 제4항, 제5항의 규정에 의해 공동주택의 발코니는 입주자모집 공고 시 공개된 총금액으로 시공사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별도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단위: 원, VAT 포함)

약식 표기	발코니 확장 공급금액	계약금 (10%)	중도금 (10%)	잔금 (80%)
		계약시	2026.11.18	입주지정일
59A	11,500,000	1,150,000	1,150,000	9,200,000
59B	10,000,000	1,000,000	1,000,000	8,000,000
84A	14,000,000	1,400,000	1,400,000	11,200,000
84B	15,800,000	1,580,000	1,580,000	12,640,000
84D	16,800,000	1,680,000	1,680,000	13,440,000
84E	15,800,000	1,580,000	1,580,000	12,640,000

■ 발코니 확장금액 납부계좌

계좌구분		금융기관	납부계좌	예금주
발코니 확장 대금	계약금	하나은행	231-910014-89505	교보자산신탁(주)
	중도금, 잔금		세대별 가상계좌 부여	

- 무통장 입금시에는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예시 : 301동 101호 홍길동: 3010101홍길동/ '입금자'란 기재 시 문자수 제한이 있을 경우 동·호수를 우선 기재하고 성명은 기재 가능한 문자까지 최대한 기재)
- 발코니는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확장 설치하였으며, 발코니 확장은 세대별로 택하여 계약하는 별도 계약 품목으로 분양가에는 미포함되어 있으며, 발코니 확장이 필요한 경우 공동주택 공급계약 시 별도의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 상기 발코니 확장비는 일괄확장을 전제로 산정한 금액이며 실별, 위치별로 선택할 수 없습니다.(확장 공간 제외 발코니의 위치는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확장 부위 표기의 '거실', '침실1' 등의 표현은 카탈로그 기준이며, 계약관련 선택사항 및 유의사항을 계약자가 직접 확인하시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확장비는 공동주택 공급금액과 별도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으며, 발코니 확장에 따른 기존 설치품목의 미설치로 인한 감소비용과 추가 설치품목 증가비용이 정산된 금액입니다.
(취득세 등 제세공과금이 미포함 되어 있으며, 추후 분양계약자가 과세관청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자재조달에 따른 계약 및 세대 내부공사 등 공사여건에 의해 발코니 확장 계약 가능 기한 이후에는 계약체결이 불가합니다.
- 단위세대 설계 당시 소비자의 성향 등을 고려해 발코니 확장형으로 설계 및 전시하였으며, 발코니 확장을 선택하지 않을 경우 공간이 협소하고 단위세대의 공간 활용도가 저하될 수 있음을 양지하시어 계약자는 계약 전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확인하여야 합니다.
- 사업주체에서 시행하는 발코니 확장은 건축법에 의거 적법하게 설계되었으며, 사용승인 후 개별적으로 확장 시에는 「건축법 시행령」 및 「공동주택관리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발코니 대피공간의 구조변경 및 설치기준을 준수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관리주체에 반드시 신고 확인 후 설치하여야 합니다.
- 발코니에는 드레인 및 선홍통이 설치되는 발코니와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가 있으며, 위치와 개수는 추가되거나 변경될 수 있으며, 드레인이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 내에서는 물을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 각 세대의 발코니에 필요시 선홍통 및 드레인 등이 시공될 수 있으며, 발코니 확장 시 비확장 세대의 발코니 사용 및 우천 시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시 실내습도 등 생활습관에 따라 발코니 새시 및 유리, 기타 확장부위에 결로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니 입주자께서 환기 등으로 예방하셔야 하며, (주기적인 실내 환기는 결로 발생 예방에 큰 도움 됨) 이로 인한 하자 발생 시 하자보수 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 발코니 확장에 따른 이중창호, 단열재 및 마감재의 추가 설치로 발코니 실사용 면적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시 발코니 확장면 평면에서 비확장으로 남아있는 발코니 새시는 단창으로 설치되며, 해당공간은 결로 방지용 단열재가 설치되나 결로 및 곰팡이 등의 하자발생 시 하자보수 대상에서 제외됨을 알려드립니다.
- 발코니 확장 시에는 확장된 발코니 일부 벽체의 단열 및 결로 방지를 위하여 확장부위 일부 벽체 및 천장이 분양내에서 그림보다 다소 두꺼워질 수 있으며, 발코니 확장세대는 인접세대 또는 상부세대가 비확장일 경우와 세대내 비확장 발코니에 면하는 경우 추가 단열재 시공으로 인하여 침실 및 거실 발코니벽체부위에 단차가 생길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발코니 확장 세대의 상부세대가 비확장일 경우 단열재 추가 설치 등으로 인한 천장 및 벽체 돌출, 우물천장 사이즈 감소, 조명의 위치와 상태가 변경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발코니 확장 세대의 상부세대가 비확장일 경우 상부세대의 배관 일부가 확장세대 상부에 노출되어 이로 인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기본형 세대(비 확장형 세대) 선택 시 냉매배관, 조명기구 및 배전기구의 TYPE, 배치 및 설치하는 확장형 세대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발코니 개별 확장세대의 경우 난방 장비용량 증설에 따른 비용 및 난방부담금은 입주시점에 아파트 관리주체와 협의하여 추가로 부담하여야 합니다.
- 발코니 확장 개별 시공함으로써 입주 후 소음, 진동, 분진 등을 초래하여 타 입주자에게 불편이 있을 수 있으나, 이에 따른 법적 책임은 사업주체와 무관하며, 또한 입주 후 상당기간 관리비 등이 과다하게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비확장 세대는 시공상의 문제로 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

4 청약자격 및 당첨자 선정 방법

구분	내용
대상자	■ 무순위(사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전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청약통장 가입여부와 무관하게 신청가능 ■ 외국인인 주민등록법상 세대원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무주택세대구성원 자격을 필요로 하는 무순위 청약이 불가합니다.
청약신청 제한	■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청약 신청 불가 - 동 주택에 당첨되어 계약을 체결한 분 또는 예비입주자 중 추가입주자로 선정된 분 - 동 주택에 당첨되었으나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분 - 부적격 당첨자로서 그 제한기간 중에 있는 분 - 공급질서교란자로서 그 제한기간 중에 있는 분
당첨자 선정방법	■ 한국부동산원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주택형별 무작위 추첨으로 무순위(사후) 당첨자 선정 및 동·호수 배정 ■ 주택형별 무순위(사후) 공급세대수의 100%까지 무작위 추첨으로 예비입주자 선정 및 예비순번 배정

5 청약신청 및 당첨자 발표 안내

■ 청약신청 방법 및 절차(PC·모바일) - 경로 : 청약홈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 무순위 → 주택명 및 주택형 선택 → 유의사항 및 청약자격 확인 → 인증서를 통한 전자서명 → 청약신청 완료 - 청약신청 시간 : 09:00~17:30 * 17:30까지 청약신청 완료해야 하며, 청약 신청 진행 중 17:30이 경과하면 청약신청이 되지 않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신청 취소 방법 및 절차(PC·모바일) - 경로 : 청약홈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 → 청약취소 → 취소하고자 하는 신청내역 선택 → 인증서를 통한 전자서명 → 청약신청 취소 완료 - 청약신청 취소 가능시간 : 청약신청일 당일 09:00~17:30 * 청약신청일 당일 17:30까지 청약신청 취소 완료해야 하며, 청약신청일 당일 17:30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청약신청 취소가 불가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 발표 서비스	
청약홈	- 조회방법 : 청약홈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청약당첨조회 - 조회기간 : 2026.05.08.(금) ~ 2026.05.17.(일) (10일간) - 당첨 결과는 착오 안내 가능성이 있으므로 유선 및 서면 등 별도 통지하지 않습니다.
문자	- 제공일시 : 2026.05.08.(금) 08:00 (제공시간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제공대상 : 청약 신청 시 휴대폰 번호를 등록하고 SMS 수신에 동의한 당첨자 * 당첨자 발표 안내 문자에는 스미싱 등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별도의 링크(URL)를 포함하고 있지 않으므로,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의 링크(URL) 또는 전화번호는 절대 누르지 않는 등 유사한 스미싱 문자에 대해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통신 환경 등에 따라 문자가 정상적으로 수신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정확한 당첨여부는 반드시 청약홈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6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서류 제출 및 계약 안내

■ 당첨자 서류제출 일정 및 장소

구 분	일 정	서류 제출 장소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2026.05.12.(화), 10:00~17:00	당사 건본주택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불당동 1517)

- 서류접수 일정은 변동될 수 있으며 추후 변동 시 일정 재안내 드립니다.
- 당첨자의 서류접수 일정 내 당첨자와 예비입주자는 동일한 일정에 진행될 예정이며, 서류접수 기간내 방문하시어, 서류접수 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예비입주자 포함) 제출 서류

구분	제출유형		구비서류	발급기준	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공동서류	○		신분증	청약자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2020.12.21일 이후 신규발급분은 제외) ※ 모바일 신분증 불가(실물 지참 필수) • 2020.12.21.일 이후 신규발급 여권은 무인발급기에서 여권정보증명서를 발급받아 본인 여권과 함께 제출
	○		주민등록표등본		• 주민등록번호, 세대주 및 세대원 포함, 주소변동사항 및 변동사유,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전체포함” 발급
	○		주민등록표초본		•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사항 · 사유 및 발생일(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전체포함” 발급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를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성명,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배우자 및 자녀, 직계존속 등 청약자와의 관계 등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 • 기록대조일 : 생년월일 ~ 현재로 설정(주민센터 또는 정부24), 출입국 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용도 : 주택공급신청(계약)용, (본인 발급용, 대리인 발급용 불가) ※ 정부24 온라인 인감증명서 사용가능
	○		인감도장		• 인감증명서상의 인장 대조 확인 필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자는 본인 서명 필수
		○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배우자	• 주민등록표등본상 배우자 분리세대에 한하며,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등 “전체포함” 발급
해외 근무자 (단신 부임)	○		해외체류 관련 증빙서류	청약자	• 국내기업 및 기관소속 해외주재원 및 출장자인 경우 : 파견 및 출장명령서 • 해외취업자 및 사업체 운영자인 경우: 현지 관공서에서 발급받은 사업 또는 근로 관련 서류, 취업 또는 사업비자 발급내역 등 • 근로자가 아닌 경우 반드시 제출 : ① 비자 발급내역 ② 계약서 또는 근로계약서 등 • 유학, 연수, 관광, 단순 체류자의 경우 생업 사정을 인정할 수 없으며, 생업 관련 증빙서류 제출이 불가능한 자 또한 인정 불가
		○	비자 발급내역 및 재학증명서 등	청약자 및 세대원	• 여권 분실 및 재발급으로 체류 국가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 비자 발급내역, 재학증명서 등 체류 국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통해 소명하여야 하며, 세대원이 청약신청자와 동일한 국가에 체류하지 않았다는 사실(계속하여 90일 초과)을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단신부임 인정 불가
		○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배우자 및 세대원	• 청약자가 해외에 체류 중인 기간 내 세대원 및 자녀 중 한명이라도 신청자와 동일국가 체류기간 여부 확인 • 기록대조일 : 생년월일 ~ 현재로 설정(주민센터 또는 정부24), 출입국 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제3자 대리인 신청 시 추가서류		○	위임장	청약자	• 건본주택 비치, 청약자의 인감도장 날인
		○	인감증명서	청약자	• 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본인발급용, 대리인 발급용 불가) • 대리인 접수 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인정 불가
		○	신분증	대리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외국국적 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	도장	대리인	• 서명 또는 날인
부적격 통보를 받은자		○	해당 주택에 대한 소명자료	해당주택	• 건축물등기사항증명서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가옥대장등본 포함)
		○			• 무허가건물 확인서 또는 철거예정 증명서
		○			• 소형, 저가주택임을 증명하는 서류(주택공사가격증명원 등)
		○			•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구분	제출유형		구비서류	발급기준	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기타		○	그 외 사업주체가 요구하는 서류	-	• 청약자의 자격요건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사업주체가 요구하는 서류 일체

- 상기 제증명서류는 무순위(사후)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상제 발급분에 한하며, 주택공급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신청 분의 당첨으로 인한 당첨 취소 및 부적격 결과는 주택공급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주민등록표등본 발급 시 기재(포함)되어야 할 내용 : 세대구성 사유, 현 세대원의 세대주와의 관계, 현 세대원의 전입일/변동일/변동사유, 교부대상자 외에 다른 세대원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 주민등록표초본 발급 시 기재(포함)되어야 할 내용 : 개인 인적사항 변경내용, 과거의 주소변동사항(전체 포함), 과거의 주소변동사항 중 세대주의 성명과 세대주와의 관계
- 서류발급 시 필히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기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인(배우자, 직계 존·비속 포함)으로 간주합니다.
- 상기 서류 외 당첨의 적격여부 확인을 위하여 별도의 서류를 추가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계약체결 일정 및 장소 (※ 예비입주자 추천 및 계약일시는 별도 통보 예정)

구 분	일 정	계약 장소
당첨자 계약 체결	2026.05.14.(목) / 10:00~17:00	당사 건본주택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불당동 1517)

- ※ 당첨자는 동호수의 공급금액 확인 후 지정된 분양대금 계좌로 계약금을 납부하고 구비서류를 준비하시어 반드시 지정된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여야합니다.
- ※ 당첨자의 계약기간은 주택소유실태 및 청약제한사항 등 전산검색 소요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당첨자에 대한 주택소유실태 전산검색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 등 적격자(정당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부적격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적격자로 재확인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부적격자는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토록 통보받은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기간(7일)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당첨 취소 및 계약이 불가합니다.)
- ※ 계약체결 이후라도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하지 못하면 계약은 취소됩니다.
- ※ 지정 계약기간 내에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정당당첨자 계약기간 내 계약 미체결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당첨 효력이 상실됨)
- ※ 계약금 지정계좌로 무통장 입금 후 무통장 입금영수증을 계약 시 제출하여야 하며, 건본주택에서 계약금(현금 또는 수표) 수납은 불가합니다.
- ※ 착오 납입에 따른 문제 발생시 사업주체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 ※ 당첨 및 계약 체결 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및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반될 시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일방적으로 해약 조치합니다.

■ 계약 체결 시 구비서류 안내

구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 기준	확인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본인 계약 시	○		계약금 입금 증빙서류	본인	• 무통장 입금 영수증 또는 입금확인증
	○		신분증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 모바일 신분증 불가(실물 지참 필수)
	○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용도 : 아파트 계약용(본인 발급용) ※ 자격확인 서류제출 기한 내 제출한 경우 제외
	○		인감도장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제외
	○		부동산 실거래신고서		• 접수 장소에 비치
		○	입주대상자 자격확인서류 일체		• 자격확인 서류제출 기한 내 제출한 경우 제외
		○	적격여부 확인을 위해 요구하는 서류 일체		• 자격확인 서류제출 기한 내 제출한 경우 제외
대리인 신청시 추가사항	○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당첨자	• 용도 : 주택공급 신청 위임용 또는 아파트 계약 위임용(본인발급분에 한함, 본인서명사실확인인 대리불가)
	○		위임장	(청약신청자)	• 건본주택 비치, 청약자의 인감도장 날인
	○		신분증, 도장	대리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국내거소신고증(재외동포)

- ※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 주민등록증
- ※ 상기 제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인감증명서의 용도란은 공란으로 발급하므로 용도를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단,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주민등록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나, 세대주 기간 산정, 배우자 관계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 ※ 거주지 등의 변경이 있는 경우 그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급하는 서류만 인정합니다.
-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인(배우자, 직계존·비속 포함)으로 간주합니다.

7 참고사항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제4항 및 제53조)

검색대상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세대원 전원																				
주택의 범위	건물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관리대장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와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분양권등																				
주택처분 기준일	1.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등기접수일 2. 건축물대장등본: 처리일 2의2. 분양권등에 관한 계약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공급계약체결일 2의3. 제2조제7호다목에 따른 분양권등의 매매계약서 가. 분양권등의 매매 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경우에는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 나. 분양권등을 증여나 그 밖의 사유로 처분한 경우 사업주체와의 계약서상 명의변경일 3. 그밖에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경우	1.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라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2.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3.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4.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법 제53조제3항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5. 주택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6.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이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7.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 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8. 무허가건물(중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이 경우 소유자는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해야 함) 9. 주택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주택 또는 분양권등으로서 해당 목에서 정하는 주거전용면적 및 가격 요건을 갖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가.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으로서 나목3)에 해당하지 않는 것: 주거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로서 별표 1 제1호가목2)에 따른 가격이 1억원(수도권은 1억6천만원) 이하일 것 나. 다음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로서 별표 1 제1호가목2)에 따른 가격이 3억원(수도권은 5억원) 이하일 것 1) 「주택법 시행령」 제2조 각 호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 2)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으로서 3)에 해당하지 않는 것 3) 「주택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 <table><tr><th>조항</th><th>주택 또는 분양권등의 유형</th><th>주거전용면적</th><th>수도권</th><th>비수도권</th></tr><tr><td>제53조제9호가목</td><td>아파트(도시형 생활주택 제외)</td><td>60㎡ 이하</td><td>1억 6천만원</td><td>1억원</td></tr><tr><td rowspan="3">제53조제9호나목</td><td>단독주택</td><td rowspan="3">85㎡ 이하</td><td rowspan="3">5억원</td><td rowspan="3">3억원</td></tr><tr><td>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td></tr><tr><td>도시형 생활주택</td></tr></table> 10. 제27조제5항 및 제28조제10항제1호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아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사람은 제외) 11. 임차인으로서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지 못한 사람이 임차주택을 경매 또는 공매로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그 주택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함. 가. 주택가격이 1억5천만원(수도권은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이 경우 주택가격의 산정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제1호가목2)를 준용함) 나.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12. 주택공급 신청자가 임차인으로서 거주하던 임차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조항	주택 또는 분양권등의 유형	주거전용면적	수도권	비수도권	제53조제9호가목	아파트(도시형 생활주택 제외)	60㎡ 이하	1억 6천만원	1억원	제53조제9호나목	단독주택	85㎡ 이하	5억원	3억원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조항	주택 또는 분양권등의 유형	주거전용면적	수도권	비수도권																	
제53조제9호가목	아파트(도시형 생활주택 제외)	60㎡ 이하	1억 6천만원	1억원																	
제53조제9호나목	단독주택	85㎡ 이하	5억원	3억원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가.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생애 최초로 취득한 경우로 한정한다)한 주택(「주택법 시행령」 제2조 각 호 및 제3조제1항제2호 · 제3호에 따른 주택만 해당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일 것
 나. 주거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서 그 취득가격(「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한 가격을 말한다)이 2억원(수도권은 3억원) 이하일 것
 다. 해당 주택의 취득일(제23조제4항제1호 또는 제2호 중 빠른 날을 말한다) 전일까지 1년 이상 해당 주택에 거주했을 것

8

기타 계약자 안내

■ 입주자 사전 방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 제27호에 의한 도장공사, 도배공사, 가구공사, 타일공사, 주방용구공사 및 위생가구공사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입주개시 전에 입주개시 약 1~2개월 전에 입주자 사전방문을 실시할 수 있으며, 정확한 예정일자는 별도 통보합니다.

■ 입주예정일 : 2029년 06월 예정(향후 일정 등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될 경우 추후 개별 통보키로 함)

■ 주차장 차로 및 출입구의 높이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 제29호의2

주차장 차로의 높이	주차장 출입구의 높이
지하 2층 : 2.7m (택배차량 진입가능) 지하 3층 : 2.3m (택배차량 진입불가)	주출입구 주차장 출입구 : 2.7m 부출입구 주차장 출입구 : 2.7m

■ 내진성능 및 능력 공개

• 본 아파트는 건축법 제48조제3항 및 제48조의3제2항에 따른 내진성능 확보 여부와 내진 능력 공개에 의거 메르칼리 진도 등급을 기준으로 내진능력을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

구분	등급
내진능력	MMI등급 VII-0.206g

■ 사업주체 및 시공회사

구 분	시행수탁사(사업주체)	시공사	시행위탁사
상호	교보자산신탁(주)	지에스건설(주)	주식회사 하늘이앤씨
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465, A, B동 7, 8층 (서초동, 교보생명보험(주) 서초사옥)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33 (청진동, 그랑서울)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성성9로 7, 609호 (성성동, 하나타워)
법인등록번호	110111-1617434	110111-0002694	161511-0174379

■ 현장 및 견본주택 위치 안내

견본주택 위치도	비고
	■ 견본주택 :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불당동 1517 ■ 사업부지 : 충청남도 아산시 탕정면 호산리 26번지 일원 (아산신도시 메트로시티 도시개발사업 A3BL) ■ 분양문의 : 1833-2543 ■ 홈페이지 : https://xi.co.kr/xi3rd

■ 본 무순위(사후) 입주자모집공고문 상 명시되지 않은 내용은 본 주택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문 및 당사 홈페이지를 통해 반드시 확인하신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